별첨 2

「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 주요 내용

2026. 11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Ⅰ. 추진배경 ····· 1

Ⅱ. 주요내용(안) ····· 2

1. 디지털자산업 ····· 3

2. 스테이블코인 ····· 8

3. 디지털자산 시장 ····· 11

4. 이용자 보호 강화 ····· 15

Ⅰ. 추진배경

□ 우리 **가상자산 규율체계**는 **▲자금세탁 방지**(「특정금융정보법」)와 **▲이용자 보호**(「가상자산법」)로 **이원화**된 구조 지속

○ **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** 및 자금세탁 방지의무 적용, **이용자 재산 보호**, 불공정거래 규제 등 **필수적 사항 위주**로만 규율

➡ 불법행위, 피해방지 등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, '**영업행위, 공시·유통**' 등 **산업·시장 측면**에서의 접근은 미흡 [참고1]

* 예) 거래소 중심의 시장 고착화, 거래지원(상장) 공정성 문제, 국내 ICO 금지 등

□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를 넘어서 '**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**' 조성에 중점을 두고 **가상자산 제도화** 노력 지속 확대

○ **미국**은 **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**(「GENIUS Act」) 등을 통해 **디지털자산업·서비스 활성화** 견인

* 특히,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, 상장기업의 가상자산 편입 증가 등 '가상자산-금융-실물 부문'간 접점 확대 추세

○ **EU**도 **가상자산 전반**을 규율하는 **통합법 「MiCA」 시행**('24년), **일본**도 관련 입법정비('22년 「자금결제법」, '26년 「금융상품거래법」)

□ 정부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**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**을 위해 보다 **종합적인 규율체계**('통합법') **마련**을 검토

* 국내 디지털자산 이용자 약 1,000만, 시가총액 약 53조원 ('26.11.20 기준)

○ 국정과제로 '**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**'이 포함,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**의원 입법안**도 **12건*** **발의**된 상황

* [통합법: 9건] 민병덕·이강일·김재섭·최보윤·박상혁·이성권·김성원·정태호·최은석
[스테이블코인법: 3건] 안도걸·김은혜·김현정 의원

☞ **시장·전문가 간담회, 관계기관TF 등을 거쳐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「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 마련**

Ⅱ. 주요내용(안)

〈 기본방향 〉

◇ ❶새로운 기회와 혁신(산업), ❷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(시장), ❸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구축(이용자)이라는 3대 축으로 추진

❶ (산업) 디지털자산업의 기능별 세분화,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고 디지털자산을 통한 혁신 촉진

❷ (시장) 새로운 디지털자산 발행·판매(ICO) 허용, 디지털자산 유통 인프라 기능 강화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효율성·공정성 제고

❸ (이용자) 국민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 시스템 구축

〈 주요내용 〉

디지털자산 산업	▪ **디지털자산 정의 명확화**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 ▪ 기능별 업(業) 분류로 **새로운 영업 허용** ▪ 진입규제 체계화, **혁신 사업자의 진입 유도** ▪ 금융회사에 준하는 **영업행위 규제체계 신설**
스테이블코인	▪ 새로운 지급수단인 **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** ▪ 제도 초기 **안정성**을 고려한 **발행업자 요건** 마련 ▪ **충분한 준비자산 보유** 및 **상환권 보장** ▪ **중요 스테이블코인** 지정·관리체계 구축
디지털자산 시장	▪ **새로운 디지털자산 발행·판매**(ICO) 규율체계 마련 ▪ 거래소(디지털자산플랫폼)의 **지배구조 개선**, **업무규정 마련** 등 유통 인프라 기능 강화 ▪ **상장 디지털자산**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 ▪ 발행량 변경 등 **중요정보 적시 공시**
이용자 보호	▪ 금융회사에 준하는 **내부통제기준 마련** ▪ 이용자 재산에 대한 **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** ▪ **전산 안전성 확보 기준** 신설 ▪ 해킹 발생시 사업자 무과실책임 및 과징금 부과

1 디지털자산업

가 디지털자산 정의 등

1 **(용어·정의)** 글로벌 정합성 등을 고려, 현행 **가상자산** → **'디지털자산**(Digital Asset)'으로 변경하고 **분산원장** 등 기술적 요소 추가

* [현행]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전자적 증표 → [제정안]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·저장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전자적 증표

◈ 글로벌 용어 사용례

- 디지털자산(Digital Asset; 美), 디지털토큰(Digital Token; 싱가포르), 암호자산(Crypto Asset; EU·日) 등

2 **(디지털자산위원회)** 현행 법정 자문기구인 '가상자산위원회'를 **「디지털자산위원회」**로 확대 개편, **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**

* [기능] 디지털자산 관련 중장기 정책·감독방향 수립 등 포함
[인원] 위원 수를 확대(15명→20~30명 수준)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

나 디지털자산업자

◇ 주요국 입법례 및 국내 시장현황 등을 감안, **4개 디지털자산업**(인가·등록) + **플랫폼운영자**(지정)로 세분화

◇ **기능별 규율체계**를 도입해 '동일 위험 - 동일 규제' 원칙을 구현하고, 다양한 **글로벌 비즈니스 영업 형태**도 가능토록 설계

[디지털자산업자] 4개 디지털자산업 인가/등록 + 플랫폼운영자 지정

인가	① 매매	자기의 계산으로 매매·교환	❑ 상법상 주식회사 ❑ 자기자본 SC 10억↑ 기타 20억↑ ❑ 임원 · 대주주 ❑ 사업계획 타당성 ❑ 이해상충 방지체계 ❑ 전산설비 보유
	② 중개	타인의 계산으로 매매·교환 등 중개	
	③ 보관	디지털자산 ·통제수단의 보관·관리	
지정	④ 플랫폼운영자	매매 ·교환 플랫폼(경쟁매매) 운영	❑ 매매+중개+보관 중 지정 ❑ 자기자본
등록	⑤ 운용	일임·자문 등 디지털자산 관리	❑ 자기자본 5억↑ ❑ 전문인력

1 **(매매업자) 자기의 계산**으로 디지털자산 **매매·교환**을 하는 자

○ **(업무형태)** 해외에서는 기관이용자 대상 **장외거래 매매**(교환소), **시장 유동성 공급자** 중심으로 영업 활성화

◈ 해외 매매업 사례

- **(교환소)** 이용자가 **자신이 보유한 디지털자산**과 다른 **디지털자산의 교환**을 사업자에게 **요청** → 사업자가 **수수료를 포함한 교환가격** 제시하고 **이용자 수락**시 거래
- **(유동성 공급자)** 英 Wintermute社는 코인베이스, 크라켄 등 20여개 이상 글로벌 거래소에 호가 제시 등 유동성 공급을 담당하여 원활한 거래를 지원

○ **(영업규제) 선행·임의매매** 등을 **불건전 영업행위**로 규제하고, **디지털자산 대여** 관련 대상·기준 등 마련

- **디지털자산 발행인** 또는 **플랫폼운영자**(거래소)와 매매 호가 제시 등에 관한 **계약체결** 후 유동성 공급 영위 허용

* 플랫폼운영자는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제시내역 및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등 공시

2 **(중개업자) 타인의 계산**으로 디지털자산을 **매매·교환**하거나 그 중개를 하는 자

○ **(업무형태)** 해외에서는 주로 **기관이용자** 대상으로 **위탁매매, 상대매매**(OTC 등) 중개업무 등 영위

※ 다만, 경쟁매매 방식 중개를 위해서는 '**플랫폼운영업자**'로 지정될 필요

○ **(영업규제)** 이용자에게 **가장 유리한 조건**으로 주문을 처리할 의무(최선집행의무) 부과*, **자기계약 금지** 등

* 기관이용자, 매매업자 등 복수 거래상대방 중 최적의 조건(가격·수량 등)을 찾아 매매주문 처리

- 이용자의 주문처리를 위해 위탁받은 **예치금**은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에 예치·신탁토록 보호의무 규정

3 **(보관업자)**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**디지털자산** 또는 **그 통제수단**(소위 '개인키')을 보관·관리하는 자

○ **(업무형태)** 기관이용자 등의 **디지털자산 보관·관리, 지분검증 예치***('스테이킹') 등

* 분산원장 거래검증 등을 위해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예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로 정의

○ **(영업규제) 계약체결** 및 **설명의무** 부과, **이용자 명부** 작성, **이용자 재산 분리 보관** 등 엄격한 선관의무 명시

- 스테이킹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에게 **위험고지** 및 **사전동의** 해킹 등 사고시 **책임이행**(추가 보험가입 의무) 등 부과

◈ 해외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사례

■ 해외 **주요 거래소**(Coinbase Prime 등)는 **기관이용자** 대상으로 '**매매처리-커스터디-투자 자문**'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"**Prime Brokerage Service**" 활성화

4 **(운용업자)** **이용자별 특성**(재산, 투자목적 등)에 맞춰 디지털자산 **운용일임** 또는 **거래자문** 등 운용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자

* [일임·자문업 통합] 일임 및 자문업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, 업무의 연계성, 통합 영위 추세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등록단위로 통합

○ **(업무형태) 기관이용자** 위주로 **디지털자산 운용**(거래판단)을 **위임**받아 **전문적인 포트폴리오 관리** 서비스 제공

○ **(영업규제)**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체결 전 **'적합성' 평가 실시, 이용자 자산보관** 및 **금전** 등 **대여 금지 규정**

◈ 디지털자산조언업 신설·규율방안

■ **(정의) 불특정 다수**에게 **▲일정 대가**를 받고 **개별성 없는 조언**을 제공하거나, **▲특정** 디지털자산업자로부터 **대가를 받고 서비스 이용을 권유**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

■ **(규율)** 「자본시장법」 상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참고하여 **디지털자산조언업** 신설 → **▲신고의무** 부과, ▲손실보전 금지 등 **행위규제** 마련, **▲금융당국 검사권** 등 **규정**

다 진입규제 : 기능별 규율에 따른 업무단위 추가(Add-on) 방식

1 **(인가)** 디지털자산 거래에 직접 관여하거나,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**디지털자산매매업·중개업·보관업**은 **인가제 적용**

○ 금융회사에 준하여, **자기자본**, 인적·물적 설비, 사업계획의 타당성, **대주주·임원 요건** 등을 심사

○ 영위하려는 "**업(業)의 종류**(매매·중개·보관)"와 취급하는 "**자산의 범위**(디지털자산·스테이블코인)"에 따라 **인가업무 단위 구분**

- **스테이블코인**('디지털지급토큰')만을 매매·중개·보관하는 경우는 다른 디지털자산을 취급하는 경우보다 **일부 요건 완화***

* 예) 스테이블코인만 취급시 최소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vs. 다른 디지털자산 취급시 최소 자기자본 20억원 이상

2 **(등록)** 이용자 재산을 **직접 보관·이전하지 않는 디지털자산 운용업자**에 대해서는 **등록제 적용**

○ 자기자본(5억원 이상),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**별도 전문 인력 요건**, 대주주·임원 요건 등 규정

라 공통 영업행위 규제

1 **(업무범위 및 이해상충 관리)** 금융투자업자에 준하여 **겸영·부수업무 신고, 업무위탁, 정보교류차단 의무** 등 규정

○ **겸영·부수업무** 영위시 신고절차 마련(7일 전), 디지털자산업과 관련된 **필수적 업무**에 대해서는 **제3자 업무위탁 금지**

○ 이해상충 식별·관리를 위한 **기준**을 마련토록 하고, 부서간 또는 업무간 **정보교류차단 의무** 부과

○ 디지털자산업자 **임직원**의 **직무관련정보 이용금지** 및 **매매거래 제한**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방지

2 **(지배구조 등)**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**대주주 변경승인, 준법감시인·위험관리책임자 임명** 등 의무 부과

○ 「금융회사지배구조법」에 준해 **임원 자격요건 마련** → 다른 금융권과 같이 **제재조치** 등을 받은 경우 **결격사유*** 해당

* 예) 디지털자산업자 임원이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으로 중징계(예: 문책 경고) 받은 경우, 3년간 금융업 및 디지털자산업 취업에 제한

○ **대주주**(특수관계인 포함)가 발행한 **디지털자산** 거래 등을 제한하고, 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의 **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금지**

3 **(경영건전성 규제 등)** 영위 업무별 리스크, 디지털자산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**경영건전성 감독기준*** 마련

* 디지털자산업자의 자기자본 유지 기준 등 미달시, 자본금의 증액, 이익배당의 제한 등 금융위 조치권 명시

○ 금융업권에 준하여 **월별 업무보고서** 제출, 해킹·전산장애 등 주요 경영상황에 대해 **즉시 공시의무** 등 규정

마 감독·검사 등

1 **(승인사항)** 영업 종료·중단, 합병, 해산, 영업 양도 등 **이용자 보호**를 위해 **중대한** 사항은 **금융당국 사전 승인의무** 부과

◈ **영업종료**(예정) **디지털자산업자 관련**

- 디지털자산업자는 **영업 종료 30일 전 공고** 후, **금융위로부터 사전 승인** 받을 필요
- 사전 승인 요청시, 이용자 자산의 이전방안 등 **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획**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토록 규정

2 **(검사·조치권)** 다른 금융업권에 준하여, **▲업무·재산상황 검사 ▲기관·임직원 제재, 과태료 ▲포괄적 조치명령권*** 등 **반영**

* 거래질서 유지, 영업방법 등과 관련해 필요 조치를 적시 발동할 수 있는 권한

2 스테이블코인(디지털지급토큰)

◇ 국내 유통 중인 **외화 스테이블코인 규율**, **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** 등을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

◇ **금융·외환·통화정책**에 미치는 영향 등 **우려사항**에 대해서는 '**충분한 보완방안**'을 마련하는 등 균형감 있게 접근

가 정의 및 발행업자 요건

1 **(정의) 하나의 통화가치**에 **준거**하여 **안정적 가치유지**를 **목적**으로 하며, **주로 지급수단**으로 활용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

➡ 지급수단의 특수성 감안, 법률상 **'디지털지급토큰'**으로 규정

2 **(국내 발행업자)** 국내 금융법령상 진입규제 등을 참고하여 금융회사에 준하는 **인가제 도입**

○ **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**, 사업계획의 타당성, 인력·물적설비, 대주주·임원 자격요건,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 등 요구

○ 다만, 제도 초기 규제준수, 자금세탁 방지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 **은행권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**부터 발행 허용

※ 법률상 인가요건을 "안정성·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주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"으로 규정 → 시행령에서 '은행 중심 컨소시엄' 요건 구체화

◈ 은행 중심 컨소시엄 관련

- 향후 디지털지급토큰 제도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, 시장 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**컨소시엄 주주구성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**
- **법률상 인가요건**에 컨소시엄 인가 심사시 **혁신성** 등도 고려하도록 명시
- 컨소시엄의 안정성을 토대로, 非은행기관이 컨소시엄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**핀테크·기술기업 등이 최대주주**로서 참여 가능

3 **(외국 발행업자)** **국제기준**에 **부합**하는 규제를 갖춘 **본국의 인가**를 받은 **발행업자**는 '**국내 지점 설립→ 금융위 등록**' 시 **발행·상환 허용**

* 등록시 ▲본국의 충분한 감독 ▲국내 거주 대표자 선임 ▲영업기금 국내 보유 ▲준비자산 운용·관리계약 등 이용자 보호체계 구비 여부 등 확인

나 발행·준비자산 운용

1 **(발행)** **발행량·발행한도, 준비자산 관리, 상환업무 등**에 관한 '**발행계획서**'를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은 후 발행

○ **발행계획이 승인**된 디지털지급토큰에 한해 디지털자산플랫폼 운영자의 **거래지원**(상장) **등 취급 허용**

* 외국 디지털지급토큰은 이미 본국의 신고·승인 등을 거쳐 발행된 점을 감안,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 신고 후 국내 유통 허용

○ **금전과 동일한 가치**로 교환하여 발행하되, **발행업자**에 대한 보유자의 **액면가 상환청구권 보장**

* 원활한 상환업무의 수행 등을 위해 발행업자의 상환업무 대행업자 지정 허용

○ 예금·증권 등과 구분되도록 발행업자 등의 디지털지급토큰 보유자에 대한 **이자 지급 금지**

2 **(운용)** **발행잔액의 100% 이상**을 은행 등 **관리기관**에 **예치·신탁**, (가)압류·상계 금지 등을 통해 **발행업자 도산위험과 절연**

○ 디지털지급토큰이 연동된 통화와 '**동일 통화**' 표시 **예금·국채** 등 **고유동성 자산**에 운용토록 규제

○ 외국 발행업자에 대해서는 **글로벌 규제 논의** 등을 보아가며, **준비자산 일부**를 **국내 은행**에 **보관·운용**토록 규율

* 예) 美 GENIUS법은 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감독당국 등록 및 역내 금융기관에 충분한 유동성 대응 준비금 보유 등 요구

다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등

1 **(지정기준 등)** 이용자 수, 발행금액(1조원 이상) 등을 고려하여 **통화정책** 등에 **영향**을 미칠 수 있는 경우 **금융위가 지정**

* EU, 美도 중요스테이블코인을 지정하고 강화된 건전성 규제·연방규제 적용: (EU) 50억 유로 이상, (美) 100억불 이상

○ 지정시 **자기자본 추가 적립**, 준비자산 **유동성 관리 강화**, **위험 평가·관리체계** 마련 등 강화된 규제 적용

○ 중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**발행업자**에 대한 **한은의 자료요구권** 및 **공동검사 요구권** 등 규정

2 **(디지털지금토큰 관련 위원회*)** 통화·외환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**총 발행량, 준비자산 구성, 중요 스테이블코인 지정** 등 협의

* 금융위원회 부위원장(위원장), 재경부 차관, 한국은행 부총재로 구성

라 감독 등

□ **(감독 등)** 금융회사에 준하여 **공시, 검사 및 제재근거** 등 마련

○ ▲발행계획(발행시), ▲**준비자산 현황, 상환청구 방법**(상시), ▲**준비자산 회계감사**(매월), ▲업무보고서(매월) 등

○ **금융위**의 **검사권**을 규정하고, 기관·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부과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제재규정 마련

○ 발행업자 등에 대한 **발행·상환·거래지원 중단조치** 등에 더해, 예비적 수단으로 **금융위의 포괄적 조치명령권** 근거 마련

3 디지털자산 시장

◇ 매매체결, 가격 발견, 정보 공시 등이 이뤄지는 **유통 인프라**인 **디지털자산플랫폼**의 **공공성·중립성** 제고를 위한 적격 요건 마련

◇ **충분한 정보 공시**를 **전제**로 국내 디지털자산 **발행·판매(ICO) 허용** → **해외 발행** 후 **국내 우회상장**하는 **관행 개선**

가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

1 **(진입요건) 매매·중개·보관업**을 모두 인가받은 자로, **충분한 자기자본, 시장운영능력*** 등을 갖춘 자를 **금융위가 지정**

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 자기자본, 시장의 효율성·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거래지원·시장감시 등 업무 기준 마련,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 등

2 **(지배구조 개편)** 디지털자산 거래의 **인프라**로서 기능을 **공정하고 책임성**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**소유분산 기준 도입**

○ **자본시장 ATS**에 준하여 **주식소유 제한(20%)** 도입

- 다만, 금융회사 등 **금융위 승인**을 받은 경우 **최대 34%까지 소유 가능**하도록 **시행령**에서 허용할 예정

- **주식소유 제한 규정 위반**시, 초과분은 **의결권 제한**

◈ 소유분산 기준 적용유예 관련

- **(기존 거래소)** 지정 이후 **3년간 적용 유예**하되, 시장점유율 기준 중소형 거래소 등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**3년 추가 유예 허용**
- **(신규 거래소)** 기존 거래소와 유사하게 **거래소 지정 이후 3년간 적용 유예**하되, 중소형 거래소 등에 대해서는 **3년의 추가 유예** 허용

○ 이사회 내 **사외이사 과반** 선임, 감사위원회 설치, 준법감시인 임면 등 **금융회사·상장회사**에 준하여 **지배구조 체계 확립**

3 **(업무규정 마련)** 현재 자율규제로 규율 중인 **매매체결, 거래지원**(상장), **이상거래 감시** 등 **거래소 기능을 공적 규제로 포섭**

○ 거래소에 **업무규정 마련 의무를 부과**하되, 거래소의 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**법령에서 주요 내용 직접 규율**

☞ **디지털자산플랫폼 3대 업무규정**

- **(매매체결)** 매매수탁 및 주문처리 방법, 매매정지 절차, 매매체결·결제 등
- **(거래지원)** 거래지원 기준, 관련 정보의 공시, 거래지원 종료·중단 절차 등
- **(이상거래 감시)** 시장감시·심리 기준 및 방법, 그 결과에 따른 조치·절차 등

○ **업무규정 변경시 금융위 보고**토록 하고, 금융위의 **업무규정 변경요구권** 명시 → 금융당국이 **공공성·중립성**을 최종 담보

나 발행공시

1 **(취득권유)** **불특정 다수**를 대상으로 (생성된 또는 생성하려는) **디지털자산의 취득** 또는 **취득의 청약**을 권유하는 행위로 정의

※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공시규제의 필요성은 디지털자산 생성(Minting) 시점이 아니라 **이용자에게 취득을 권유**(Offering)**하는 시점에 발생**

2 **(발행공시 주체)** 디지털자산을 생성한 **발행인** 및 그 발행·개발·운영 등에 **적극적으로 참여한 자*** → **'발행인등'**으로 규정

* 예) 네트워크의 개발자·관리자, 프로젝트팀, 위탁운영자, 공동 발행인 등 → 발행인(회사)이 명확한 증권과 달리, 다양한 주체가 발행 정보생성에 관여

○ 또한, '발행인등' 外 **취득권유 과정**을 **조력·대행**하는 **디지털자산업자**(매매·중개업자)도 **공시 주체***가 될 수 있도록 함

* 발행인 등의 특정이 어렵거나, 해외 발행 디지털자산을 취득권유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업자를 통해 공시의무 이행 가능

3 **(발행신고)** 취득권유하려는 발행인등(또는 주선인)은 **'디지털자산 백서'**를 **작성하여** 취득권유 전에 금융위에 신고해야 함

○ 백서는 자본시장 **'증권신고서'**와 유사하게, **▲취득권유자** ▲자금 사용처 **▲발행량** ▲프로젝트 ▲리스크 등 기재

* 이용자 편의를 위해 백서의 핵심사항을 담은 '**디지털자산설명서**' 별도 작성

○ 금융위는 **공시서류 심사*** 후 **신고수리**하되, 중요사항 및 첨부서류 누락 등에 대해서는 **정정요구권 행사**

* 증권신고서와 다른 디지털자산백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EU(MiCA) 등도 백서 내용에 대한 **금융당국의 실질적 심사까지는 요구하지 않음**

○ 신고 수리된 백서 등은 '(가칭)**디지털자산 통합공시시스템**' 등에 공시 → **숙의기간**(예: 7일) 후 '발행인등'의 취득권유 허용

다 유통공시

1 **(유통공시 주체)** 자기가 운영하는 경쟁매매 플랫폼에서 **특정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** 하려는(또는 중인) **플랫폼운영자**

☞ **거래지원시 공시의무 주체 관련**

■ '**발행인 등**'**을 특정하기 어렵거나**, **해외에서 발행된 디지털자산** 등이 거래지원되고 있어, 그 과정을 주도하는 **플랫폼운영자를 통해서만 공시의무 이행이 가능**한 상황

→ 플랫폼운영자는 발행인 등과 **거래지원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확보 가능**, 거래지원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**전문성 등 보유**(MiCA도 플랫폼에 의무 부과)

2 **(거래지원보고서)** **디지털자산백서**와 **동일한 수준**으로 발행인, 발행량, 프로젝트, 리스크 등 정보 기재

※ 旣 공시된 '백서'가 있는 경우, 이를 갱신하여 거래지원보고서로 갈음

○ 거래지원 이전(예: 7일) **거래지원보고서 및 디지털자산설명서** 작성 → **금융위 제출** 및 **통합공시시스템 공시**

3 **(수시공시)** 디지털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**▲발행·유통량 변경 ▲해킹 등 중요정보는 즉시 공시**

※ 정보의 '중요성(Materiality) 기준'에 따라 법정공시(금감원), 자율공시(협회) 사항으로 구분하되, 세부 항목·서식 등은 하위규정에 마련

라 공시 신뢰성 확보방안

□ 백서·보고서 중요사항에 관해 **거짓기재·누락**이 있는 경우 **공시의무주체**(해당 임원 포함)에 대해 **엄격한 손해배상책임 부과**

○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여 **금융위의 조사** 및 **자료제출 요구권**, 부실 공시에 대해 **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** 근거 마련

※ 디지털자산의 국내 발행·유통 규율체계

❶ **[취득권유] 발행인 등**이 **디지털자산백서**를 제출하고 **불특정다수인**에게 **취득을 권유** → 이후 OTC 등에서 유통

❷ **[거래지원] 디지털자산플랫폼운영자**가 **거래지원 규정**에 따른 **심사**를 거쳐 **거래지원보고서**를 공시하고 **거래지원**



4 이용자 보호 강화

가 영업행위 규제 전반 정비

1 **(권유규제 등)**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**설명의무, 부당권유 금지, 약관·광고규제** 등을 디지털자산업자에도 적용

○ **각종 수수료**에 대한 **부과 및 산출기준 공시** 등 수수료 산정 투명성을 제고하고, 이용자에 대한 **계약서류 제공의무 부과**

2 **(내부통제기준 마련)**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**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** 부과

3 **(이용자 재산 보호)** **이용자 재산의 상시 점검** 및 **외부기관**(회계법인)의 주기적 **회계감사** 의무화

○ **이용자 명부 작성** 및 **이용자 자산에 대해 분별관리**토록 하고, 분별관리된 이용자 자산의 **상계·압류 금지** 등 **도산절연 근거 마련**

4 **(전산·보안 강화)** 디지털자산거래와 관련하여 **금융회사 수준의 안전성 확보 의무*** 신설

* 예) 인력·조직 확보, 전산설비 등 규제, 해킹 방지대책 등 정보보호 조치, 이용자 인증수단 관리, 비상대책 수립, 업무 지속성 확보 등

○ 해킹·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시 디지털자산업자에게 **이용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*** 부과

* 해킹·전산장애 등 발생시 **원칙적으로 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**하되, 예외적으로 이용자 고의·중과실이 있거나 약관에 규정된 경우는 이용자도 책임 부담

○ 디지털자산업자가 전산 안전성 의무를 위반해 **해킹·전산사고 발생시 징벌적 과징금**(최대 매출액의 10%) 부과 근거 마련

나 불공정거래 규제 보완

◇ 그간 **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과정**에서 「가상자산조사심의회」 등을 통해 제기된 **보완 필요사항 등을 정비**

1 **(불공정거래 적용 범위)** 거래지원 중인 디지털자산 뿐만 아니라 **거래지원 심사 중**인 **디지털자산**까지 확대

* EU MiCA의 경우도 거래플랫폼에서 거래가 승인되었거나, **거래승인 신청 중인 암호자산**까지 불공정거래 규제 적용 대상으로 포섭

2 **(미공개 중요정보)** 디지털자산업자의 임직원 등이 **내부자 지위 상실**(퇴직 등) 후 **미공개 정보 이용**시의 규제 공백 보완

○ 내부자 지위 상실 후 **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**를 **내부자 등에 포함**되도록 규정하여, 퇴직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제한

3 **(시세조종)** **매매 행위**(원화거래소)에 더하여 **교환 행위**(코인거래소)까지 시세조종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확대

4 **(지급정지·거래제한 제도)** 불공정거래로 인한 **불법이익 은닉 방지**, 혐의자의 **재범 방지** 등을 위한 비금전제재 도입 추진

○ **불공정거래 관련 상당한 혐의**가 있는 경우, **금융위 의결**로 **▲지급정지**(계정·계좌 동결) 또는 **▲디지털자산거래 금지**

* [지급정지] 6개월의 범위에서 디지털자산거래·금융거래 정지(계좌·계정 동결) + 1회(6개월) 연장 가능 (최대 12개월)
[거래정지]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디지털자산 계정 개설 및 거래 제한

5 **(자진신고자 감면 제도)** 불공정거래 관련 범죄를 **자수·자진신고**하거나, **타인의 범죄 증언**시 **형벌·과징금 감면** 근거 신설

○ 자본시장법 사례를 참고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**포상금 제도 도입**

참고 2 디지털자산법 제정 기대효과

